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96 3-6	A	118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설명회 및 기자회견

1996. 4. 26

진행 순서 (사회 : 최정규)

인사말 :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내외빈 참석자 소개

범국민 서명운동 경과보고 : 최정규 (외노협 집행위원장)

성명서 낭독 : 박석운 소장(한글) 외국인노동자대표(영문)

기자회견 : 박석운 소장의 실무자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

기자회견
(주제발표자)
김광수(서명운동대표)

NEPAL OLI (32才)
(Nepal)

기자회견 자료

- 1) 경과 및 실천 계획
- 2) 성명서
 -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 외국인 노동자 일동
- 3)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
- 4)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시안
- 5) 서명용지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상임대표 김해성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공동대표 박순희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회장)

경과 보고

외노협은 95년 10월 정부에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사면과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제정을 요청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공청회를 주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취업절차를 정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대책을 규정함으로써 외국노동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96년 4월 26일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이하 서명운동)과 관련한 설명회 및 기자회견

4월 28일

서명운동 발대식
제 106주년 세계 노동절기념행사 참석 및 서명운동, 캠페인 거리서명운동과 캠페인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한다

5월 1일

서울지역(종묘 예정) 캠페인과 거리서명운동으로 서명운동 마무리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에 입법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6월 2일

6월 3일

6월 7일

* 외노협은 입법청원 후에도 올바른 외국인노동자보호법(가칭)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정운동을 할 것입니다.

* 96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국제화시대의 이주노동자 문제’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지역 외국인노동자 운동단체의 실무자 모임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 UN이 정한 97년 ‘이주노동자의 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제기할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사면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명동성당 농성 이후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우리 사회가 가진 또 하나의 치부로 부각되었으나 정부는 별다른 대책이나 제도개선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지 5년이 넘는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는 그들이 지나온 5년의 역사가 곧 불행이었음을 이야기한다.

한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착취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일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낙인찍혀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높은 이윤을 남겨 보겠다는 추악한 자본의 논리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 불명예스러운 낙인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지금도 외국 인력 수입 제도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만들어낸 불법체류자들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온갖 차별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는 상습적인 폭행과 계산되지 않는 강제노동,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제도만으로는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나라 국민’이니 차별해도 된다고 하지 말자. 애니깽 가시에 손, 발을 찢기며 눈물을 훔치던 우리 할아버지와 독일에서 광부, 간호원들이 겪었던 설움을 잊었다고 하지 말자.

96년 3월에 우리는 스스로 목을 맨 외국인노동자의 장례식을 치루어야 했다. 고국에 있는 아들이 사고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을 서둘렀으나 출입국은 벌금 200만원을 내라고 하였다. 당시 그는 3개월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하여 비행기 표도 급전을 마련하여 구했다. 좌절한 이 노동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단속과 벌금 책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 정부정책이 빚어 낸 비극이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관리한다는 방법이란 단속과 강제출국 그리고 과중한 벌금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연수생을 추가로 도입하여 메꾸면 그만이고 그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면 단속하여 벌금받고 강제 출국시키면 그만이다. 이 알파한 수법으로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면서도 되려 책임은 연수생 이탈을 방조한 중소기업체로 떠 넘기고 있다. 대다수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일한 지 2~3년 되었고 기술 숙련도나 생활 적응도가 높아 이들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단속과 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내년은 UN이 선포한 ‘이주노동자의 해’이다. 전 세계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동등한 권리 보장과 상호 공존의 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한 해인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 취지에 발맞추어 <산업기술연수생>제도등 불합리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을 중지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을 전면적으로 사면, 합법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사면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기 위하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안정되고 살맛나는 일터를 주고, 국민에겐 세계인과 함께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주기위해 그 첫발을 내딛는다.

6년 4월 26일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26/4/1996)

한국정부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모든 인간은 신성한 노동의 권리가 있고 그 노동권은 평등합니다 **

** 가난한 부모가 죄인일 수 없듯이 모국의 낙후성으로 차별이 전제되어선 안됩니다 **

** 인권과 노동권의 동등한 보장 없는 세계화는 허구입니다 **

외국인노동자라 통칭되는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난한 이방인’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했던 우리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너무도 당황하게 했습니다. 본국보다는 밥벌이가 좀 더 수월하리라는 생각만으로 한국땅을 디뎠을 뿐 그 이상의 생각 - 노동환경, 인간관계, 문화적차이, 인간적 모멸감 등 - 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이 수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노예처럼 취급하는 데서 오는 비애와 너무도 고된 장시간의 노동, 몸이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죄인처럼 쫓겨다니며 숨어서 일을 해야하는 ‘불법체류’라는 신분이 우리를 맥빠지게 합니다. 한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고향친지들이 바로 코앞에서 잡혀가도 나만 살아남기 위해 줄행랑을 쳐야하는 이이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달치 월급을 못받고도 사업주가 신고할까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페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산재적용 또한 불법이라는 체류신분상 약점을 잡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법적 보장이란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형식적 과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 불법과 합법을 나눕니까. 한국 노동법에도 ‘인종과 종교와 국경을 초월하여 노동의 권리는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상황이 우리를 원하고 있고, 우리 또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이 땅에 찾아왔으니 더도 덜도 아닌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도록 해 주고, 직선이 아닌 우애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끝난 배고픈 고통을 우리는 아직 이겨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경제적 부의 정도에 의해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이며 저급한 평가라고 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출국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은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합니다. 몸이 아파 장기치료를 해야 할 때, 부모님 임종시, 집안의 각종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도 벌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원한다면 우리도 한국인과 똑같이 낼 것이며,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비용도 내겠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노동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국민 모두와 우리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보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정당한 통로와 합법적인 신분은 한국정부만이 아닌 우리들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땅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싶습니다. 평등한 노동의 기회가 주어질 평화로운 세상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 노동이 가난한 조국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한국경제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 목표가 아닐까요.

1996년 4월 26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일동

Message to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 Every man has the sacred right of labor and the right is equal. **

** Just as parents cannot be criminals for they are poor, it is unfair if there can be a discrimination because our homelands are underdeveloped. **

** Segyehwa (globalization) movement is a perfect lie, without the equal guarantee of the right to labor and human rights.

We, commonly called foreign workers, are 'poor strangers from Southeast Asia'. We had to leave our homelands toward a better future. But the reality upset us too much. We came to Korea only with the thought of a better means of living than that of home country. We didn't think about anything else, for example, the labor environment, human relationship, cultural difference, human contempt, and the like, at first. Of course, we know well everything cannot be easy in an unfamiliar country. Yet, we really feel sad when we are treated just as slaves, when we do too a hard work for many hours, and when we face the reality in which we cannot be under medical treatment at ease though we are so sick.

First of all, we become frustrated at the fact that we have the social standing of 'illegally staying' foreigners, who are to work in hiding just as criminals. Even when co-workers and home acquaintances working are arrested in the same factory, we cannot help running away to survive, without saying good-bye to them. This kind of situation never stops. For fear that the heads report us to the authorities, we cannot say a word even when our salary are not paid for several months. Taking advantage of our weak points in social standing, the heads do not apply industrial disaster when we are in an accident during the work. Lawful guarantee with no actual exercise is no more than formal showing-off.

What standards can discriminate legal and illegal? We heard that Korean labor law contains the clause stating 'the right to labor is equal beyond the race, religion, and the border'. Korea needs us, and we came here looking for a chance to work. We just want to be given a proper pay for what we do, no less or no more than what we do. And we also expect a friendship rather than charity from Koreans. The fact is that we did not yet overcome the hunger, which Korea had already conquered. That's all. It is unfair and vulgar that one judges other person's personality according to how much he has.

In addition, another thing is the fine that illegally staying workers should pay when they depart from Korea. It makes us frustrating all the more. On occasions of parents' deathbed, long-term treatment, and a variety of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we just find ourselves in a dilemma due to the fine. We are willing to pay tax and expenses for social security, if wanted, just like Koreans. This is not just for us. Please establish a protection law for both Korean people and foreign workers. A fair way to labor and legal social status are our long-wanted desire as well as Korean government's. We think Korea as our second homeland. Help us love the country. We are waiting for a time of peace and an equal chance of labor. We have done our best to make a sacrifice of ourselves for our poor fatherlands and also to do a certain rol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And we will continue to do this. A world in which everyone can be happy, isn't it the purpose of a true democracy?

April 26, 1996

Migrant Workers Working in Korea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및 현지법인 기술연수생들의 인권 실태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최근 정부는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신 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며 지난날의 노동악법들을 개혁하고 노동관계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도록 고치겠다고 발표하였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대대적으로 '신 노사관계 구상'을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다. 이쨌든 지난 독재정권하에서 억눌리고 통제되어 왔던 노사관계법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상'의 개혁성 유무를 떠나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법이나 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1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8~9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상태로 있다고 추정된다. 외국인력고용정책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종 불평등 대우와 인권침해, 그리고 대량의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이에 대한 관련법규와 제도를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번 '신 노사관계 구상'에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UN이 97년을 '이주노동자의 해'로 제정한 것이 이제는 진부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이주 노동자'에 대해 한마디 언급정도는 있어야 했다.

총선전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철폐하고 새로운 고용허가제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현재 향후 노동법 개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신 노사관계 구상'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총선전 약속도 기만술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신 노사관계 구상'에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각 사업장에서 단단히 한몫을 하는 '일꾼'들인 이들을 무시하고 중소기업 문제에 대하여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지금도 묵묵히 결실의 땀을 흘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을 위한 관계법 제정을 서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불법체류자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돋는다는 취지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불법체류자 및 현지법인연수생에 관한 실태 보고서이다. 국내의 불법체류자와 현지법인 연수생들이 당하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항목별로 여기에 정리하였다.

1. 노동법은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멀기만 하다.

노동부는 명동성당 농성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운영하는 취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법으로 인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상담실 문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이라는 영문도 없는 한글 스티커만이 붙어 있을 따름이다. 물론 이곳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담할 만한 전문가(영어 구사라도 할 수 있는)도 있지 않다. 게다가 '불법체류자'라는 출입국법 위반은 노동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만 '적극적 대처'라는 애매 모호한 처리 방식만이 있을 따름이다. 가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업주들이 임금을 체불시키고도 당당하게 노동부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것은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5조가 규정한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기본취지마저 스스로가 위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불법체류자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노동법에 대한 차등 없는 적용밖에는 없다. 이것이 가능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게 노동한 땀의 결실을 합법적으로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활용하여 착취를 정당화하는 악덕 기업주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네팔인 비팍(Bipak, 남, 25)씨는 포천에 위치한 고려인삼이라는 드링크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회사는 95년 들어 6개월 동안 임금을 체불시켜 6달치(월 60만원)의 임금 36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상당소의 도움으로 의정부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장에게 출두 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하였다.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이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이유이다.

2. 법은 없고 주먹만이 있다.

-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자행되는 사업 장내 폭행

국내에 합법적으로 고용되는 연수생조차도 언어 교육이나 생활,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없이 공장으로 배치되고 있다. 하다못해 연수생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서조차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나라에 대한 문화, 생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민간 송출 업체를 통하여 연수생을 들여오다 보니 변변한 교육이 이루어지려야 질 수 없는 것이다. 중기협에겐 이들이 당장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 일하는 기계로 보일 것이고 송출업체는 송출 업체대로 이들이 '돈'으로 계산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이보다 더욱 열악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사업주와 고용인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거칠은 현장에서는 당연히 폭언과 구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먹질의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고 있다. 대다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구타를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경찰에 가려면은 불법체류자이기에 강제 출국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찰서는 사업주가 해결의 의지만을 보이면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라 하여 출입국으로 보내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신세만을 한탄하며 폭행을 감내 하여야 하고 유일하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을 도망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다. 자신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송출 업무를 공공 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외국인과 고용주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적응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업 장내 폭행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여 다시는 '인권 시비'를 불어 일으켜서는 안될 것이다.

필리핀인 남(nam)씨와 친구 2명은 9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 쉬는 날이었지만 사장이 회사가 바빠서 그러니 일 좀 해 달라고 하여 한국 사람들은 쉬는 날에 3명이 일을 하였다. 저녁때 일이 끝나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조장이라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 휴일날 일을 하였다고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둘렸다. 3명은 눈과 이마가 찢기고 온몸에 멍이 들어 3주의 치료를 받았다.

필리핀인 로날드 삼(Ronald Sam)씨는 평소 삼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공장장이 오후 작업 도중 실수로 떨어트린 물건 박스를 고의로 내팽개쳤다며 주먹을 쥐고 달려 들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공장장은 삼씨의 머리를 땅에 짓이기고 정신없이 주먹을 휘둘렸다.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주먹과 발길질이 멈추지 않자 아주머니들이 달려들어 공장을 떠어 냈다. 병원으로 옮겨진 삼씨는 머리를 7바늘이나 폐매었다. 회사 사장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며 평소의 근무 태만이 원인이었다며 공장장을 주둔하였다.

네팔인 부샬(Balkrisna Bushal 34세)씨는 95년 8월 30일부터 인천에 있는 정진 플라스틱에서

일하던 중 11월 5일 원손 중지와 약지의 첫째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일요일이라 공장에는 혼자서 일하고 있어서 옆공장 사람이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나중에 사장이 나타나 안부를 묻기는커녕 누가 이런 비싼 병원에 데려왔느냐고 화를 내며 바로 작은 병원으로 옮겼다. 보통 이런 사고는 한달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사장은 막무가내로 6일만에 퇴원시켰다. 며칠 후 부샬씨가 산재 보상에 대하여 사장에게 물어 보니 사장은 오히려 때리며 그따위 소리를 자꾸 하면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넘겨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어쩔 수 없었던 부샬씨는 다음날부터 한 손을 봉대로 감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근처의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하였다. 그러나 사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내고 다닌다면 또다시 때리고 협박하였다. 이날은 너무 많이 맞아 이가 훈들리고 입술이 터져 흉하게 얼굴이 부어 올랐다. 이후 사장은 보상금 50만원을 줄 테니 합의서에 싸인하라며 안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옷도 못 챙기고 도망쳐 나왔다.

3. 불법체류자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도 없다.

- 송금 피해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지갑에 거액의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하는 방안 깊숙히에 거액의 돈을 숨겨 놓는다. 때론 몇백 만원의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수표도 아닌 현금을. 이들은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싶어도 은행을 이용할 수 없으니 당연히 소지하거나 숨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때론 마음씨 좋은 한국 사람을 맞나면 이 사람을 통하여 송금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도 쉽지 않고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한국 사람에게 걸리면 송두리째 빼앗기곤 하여 이것 또한 여의치 않은 것이다. 이들에게 은행은 가까이 있지만 문턱은 높기만 한 것이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들의 송금을 합법화시켜 이들이 홀린 땀의 대가가 사기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글라데시인 빠루(paruk 남, 24)씨는 95년 3월경 본국에 송금이 여의치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였다. 마침 한국인 동료가 보내 주겠다고 나서서 빠루씨는 믿고 200만원을 주었다. 그러나 한국인 동료는 돈을 가져가서는 써 버리고 '내가 언제 받았나?'며 돌이어 뻔뻔스럽게 나왔다.

한 방글라데시 사람(성명 미상)은 출국하는 길에 친구들의 부탁으로 10명 정도의 돈 4000만원을 들고 출국하려다 김포 세관에 잡혀 3000만원을 압수 당하고 풀려났다. 이 사람은 친구들을 도와주고자 한일이 사고를 만들게 되어 친구들 볼 면목이 없다며 망연자실하여 명하니 하늘만 응시하고 있었다.

4. 차라리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라!

- 자진 신고자 벌금 징수

법무부는 보통 1년 한두 차례 정도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을 두어 단속을 중지하고(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속도 하지 않는다.) 출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고 가도록 해준다. 이러한 법무부의 정책을 불법체류자들은 대다수가 알고 있다. 그렇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시기를 통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곤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본국에서 요양이 필요하다거나 집안에 흥사가 있을 경우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가피하게 이들은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출국을 해야 할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럴 경우 출입국은 어김없이 벌금을 납부하게 한다.

그것도 몇백만 원을 눈도 깜짝 안하고 받아 낸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대다수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을 포기하거나 주위 친구들에게 빚을 지며 까지 벌금을 납부며 출국을 한다.

출입국은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출입국이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출국을 할 수 없도록 막아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을 독려하고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의 벌금 징수는 중지되어야 한다. 제도 자체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근절하려고 한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국고포 노영춘씨는 중국에 개신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급히 출국을 준비하였다. 출국을 위해 출입국을 찾아갔으나 200만원의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출국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같은 동포로서 이럴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급한 마음에 돈을 낼 테니 보내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저리 친구들을 찾아 돈을 마련하여 출입국에 갔으나 돈내는 것도 힘든지 대기실의 딱딱한 긴 나무의자에서 네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필리핀인 라굼베이(Salvador D Lagumbay 남, 34세)씨는 연수생으로 94년 3월 15일 입국하여 청주의 한 공장에 배치되어 몇 달 일하다 도망 나와 가리봉동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몇 달도 되지 않아 통고도 없이 공장 문이 닫혔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공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다시 대구의 화훼 농장에서 일하였으나 여기도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과 트럭이 농장을 업에 버리고 모래, 자갈을 쓸어 부어 건축 자재를 쌓아 놓다. 사장은 종적을 감추었고 다시 3개월이나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였다. 결국 라굼베이씨는 한국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출국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출국 또한 이 사람에게는 쉽지 않았다. 출입국은 라굼베이씨가 연수생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일반체류자보다 2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1년 6개월 불법체류하였기 때문에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소연 하였지만 출입국은 돈만을 얘기할 뿐이었다. 고개를 떨구던 라굼베이씨는 지금도 어디선가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자의 생활을 또다시 하고 있을 것이다.

5. 우리는 병원에 가고 싶다.

- 출입국 보호소의 인권침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자진신고후 벌금 납부이고 또하나는 단속에 걸려 강제 출국되는 경우이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다. 보호소의 구조는 일반 교도소와 같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진 신고보다 오히려 잡혀서 보호소에 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강제 출국은 벌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호소 또한 편한 곳은 되지 못한다. 나이 어린 출입국 직원들 조차도 4~50살의 외국인들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는다. 그래도 이것은 참을만 하다. 몸도 가누기 힘들어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 조차 동일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재나 체불등 각종 송사가 걸려 있는 문제도 본인이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들은 출입국 관리법에 있는 “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이 철저하게 무시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용의자가 강제퇴거(출국)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중략) 7일 이내에 (중략)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0조)”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 할 수 있다.(제 61조 1항)”라고 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조항들을 알지 못하기에 이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행해야 하는 출입국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보호소내의 인권 침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국고포 김길원(33세)씨는 금년 1월 19일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톱에 손가락 2개를 절단 당하여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회사측에서 물리치료에 대하여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는 이유 없이 여건을 달라고 하였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사장으로부터 “삽”으로 구타를 당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집중 구타를 당했다. 구타를 당한 김길원씨는 회사측의 고발로 경찰서로 넘겨졌고 경찰은 다시 출입국보호소로 이송하였다. 김길원씨는 보호소에서 피가 나오고 배와 허리의 통증 있고 산재 당한 손가락의 물리치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호소는 한번만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보호소 사정을 핑계로 일반병원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치료 시설도 재대로 갖추지 않고 진료분야도 몇 개 되지 않는 보호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한다. 의무실에서는 배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 “파스를 불여라!” 손가락 물리치료를 요구하면 “손가락을 계속 움직여라!”는 정도의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

이후 면담한 실무자가 보호소에 병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보호소측은 당연하다는 듯이 환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병원진료실 까지 대리고 들어갔다. 진료를 하는 의사조차 분노하여 화를 내었고 같이 동행하였던 실무자도 항의를 하여 수갑을 풀도록 하였다.

중국고포 최철수(41세 92년 12월 4일 입국)씨는 95년 12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던 인부가 지지대(일명 폴)를 떨어트려 이것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및 뇌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의사가 안정 가교가 필요하다며 휴식을 권하고 있다. 보호소는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알아서 치료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6. 사랑에는 국경이 없지만 결혼에는 국경이 있다.

- 결혼 및 2세 문제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지 5년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많아지고 아이까지 가지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2~30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이러한 변화와는 무관하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내법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결혼할 경우 여자에게 국적을 취득하게 하지만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가 결혼할 경우는 외국인 남자가 3년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전에는 국적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3년 이상을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이므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혼한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걱정은 국적 취득이나 혼인신고 보다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단속에 걸려 강제 출국이라도 당하면 4년 이내에 다시 올 수 없으므로 결혼 생활 자체가 파산될까 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두려워 대개 가족 방문 목적의 F1비자를 만든다. 그러나 이것도 체류 기간이 3개월이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 3개월마다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한번 나갈때마다 100~150만원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아래저래 이들에겐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하나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관련 법을 개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적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이 전근대적인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네팔인 지반(Jiban Sherestha)씨는 한국인 김모씨와의 사이에 한살배기 아기를 낳아 살고 있다. 현재 두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아이는 미혼모가 사생아를 낳은 형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다. 멀쩡한 아이가 사생아가 되어 자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보다도 지반씨의 F1비자가 거의 끝나고 있어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받으려면 다시 네팔로 돌아가야 한다. 한 번 갔다 오는데 150만원의 비용뿐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안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탁한 처지가 걱정이다.

태국 여인 어이씨는 한국인 주모씨와 함께 살지만 법적인 혼인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어이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 때문에 출입국에 보관되어 있는 여권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고 하여 걱정하고 있다. 어이씨는 담석증 때문에 수술을 하여야 하지만 의료보험이 없어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어이씨에게는 벌금을 마련하기 전에는 한국 남자와 살고 있지만 결혼도 의료보험도 아직 먼 얘기일 뿐이다.

방글라데시인 사이파울(Saipaul)씨와 하산(Hassan)씨는 공히 한살배기 아기가 있다. 두사람은 작년 9월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혼인신고는 하였지만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어떻해야 할지 아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7. 월급 12만원 받는 노동자가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 현지법인 연수생의 실태

국내에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정책은 특별한 경우 제외한다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혼히들 알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법인 기술 연수생”이다. 현지법인 기술 연수생은 해외에 현지법인을 만든 회사들이 기술 연수라는 명목으로 본사에 대리고 와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현지법인 연수생은 부족 인력 수요를 메우는 노동력으로 사용된다. 이를 대다수는 현지법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받고 있음으로 대기업들 조차도 값싼 노동력에 눈이 멀어 기술교육은 간대 없고 더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100달러 정도의 열악한 임금과 불법체류자도 적용되는 산재 보상이 이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아 또다른 제2의 연수생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같다. 대기업 조차도 이들을 들여와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을 안겨 주어 이후 심각한 노동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지법인 연수생이 해당 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을 안겨 줄 수 있기에 노사 합의 속에서 도입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된 현지법인 연수생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은 국내 노동 관계법이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시흥시 시회공단에 위치한 00정공은 금형을 생산하는 소규모 제조 회사로 중국 심양에 94년 3월 “심양천창기차유수유한공사”를 한중합자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국내 공장의 인력난의 타개책으로 합작사를 통하여 연수 명목으로 중국인 5명을 95년 5월 법무부 사증 발급을 받아 고용하여 왔다. 그러던중 금년 2월 2일 중국고포 박용건씨가 오른손 3.4.5지를 절단 당하는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회사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는 “불가”였다. 통보 내용은 이렇다.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대

한 산재 혜택은 법규나 규칙 등의 법적 조항에 의한 수해가 아니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보상인데 폐사의 경우와 같이 합작사 의뢰에 의한 순수 기술 연수 취업은 근로목적연수가 아닌 까닭에 위의 정책적 배려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 사장은 노동부장관에게 현지법인 연수생에게도 산업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장은 탄원서에 “연수의 성격이 틀리다 하여도 산업현장에서 흘리는 땀의 가치가 다르다 할 수 없으므로 차별 없는 산재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천 부평에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대우 자동차가 위치해 있다. 현재 부평 자동차 생산 라인에는 폴란드 대우 자동차 현지법인 통하여 들어온 폴란드 노동자 230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임금은 약12만원 정도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대우 자동차 노조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수생 고용에 반발하고 있으며 회사측은 기술연수명목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생산 라인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등 사실상 근로 목적의 연수생 고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 제정시안

1. 총 칙

- 1) 법의 제정 목적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절차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대책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인력의 적정한 활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
- 2) 이 법의 적용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국적법상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자로 하되, 산업기술연수생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 3) 노·사·공의 대표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도 입규모·관리·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결정토록 한다.
 - 외국인 근로자 취업 가능 업종·사업장 규모 및 기간 등을 심의·결정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위원회 산하에 "외국인 근로자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따른 제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청구로 함.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조 함.

2.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

- 1)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제' 실시
 -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의 국내취업금지
 - 노동허가는 일반노동허가와 특별 노동 허가의 2가지 종류 운용
 - 일반노동허가는 취업가능 업종, 사업장 규모 및 기간 등의 제한됨
 - 특별 노동 허가는 일반 노동 허가를 받은 후 6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한 경우에 가능하며, 업종·규모·기간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음
 - 일반 노동 허가는 1년 기간으로 부여하되,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함
 - 노동허가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2)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해 도입함
 - 상대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국가지정 공익 기관에서 인력 송출을 담당하게 함
 - 현지 파견 노동부 공무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계약 체결
 - 인력 송출 회사에 의한 인력 송출 금지,
 - 모집과 알선 비용 및 근로자 왕복 여비 고용사업주가 부담
- 3) 충분한 언어 교육과 적응 교육 후 근무케 함
 - 현지에서 최소한 2개월 이상의 한국어 교육 실시 후 송출
 - 입국 후 최소한 1개월 이상의 한국어 교육 및 적응 교육 후 실제 근무케 함
- 4) 사업주에게 송출국의 문화, 종교, 관습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후 시기 실시
 - 사업주 또는 사업장 관리 책임자에게 실시
- 5) 입국 전·후에 건강 진단 실시
 - 송출국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합격자에 한해 송출
 - 입국 후 건강진단 실시, 합격자에 한해 노동허가 발급
- 6) 국가간 민간 단체 협력 및 그를 위한 정부 지원

3.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1) 노동법의 전면 적용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의 전면 적용

2) 차별 대우 금지

- 외국인 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조치를 금지
- 벌칙

3) 사회보장법의 차별없는 적용

-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법의 차별없는 적용

4) 일정 조건 하 사업장 이동의 보장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 가능
 - * 사용자의 근로계약, 노동관계법 위반 시
 - * 차별대우가 있을 시
 - * 사업장의 휴, 폐업 시
 - * 폭력 행사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 위의 경우 먼저 외국인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 신청
- 고충 심사 후 당사자간 조정 또는 사업장 변경 조치

5) 공공직업안정 기관의 구직 알선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의한 구직알선 실시
- 사적인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직업소개 금지

6) 귀국 시 지원 조치

- 귀국 시 희망자에게 직업훈련 또는 사업 현 정보 제공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보조금 지급 가능

4. 벌칙

- 1)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자유형 또는 벌금형
- 2) 5인 이상의 노동 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였을 시
 - 자유형
- 3)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 알선, 파견 하는 자
 - 자유형
- 4) 노동 허가 없는 취업
 -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적용
 - 벌금형, 퇴거명령, 강제송환
- 5) 노동 허가 없는 취업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동종의 내국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불리운 근로조건으로 근로시키는 경우
 - 자유형

5. 부칙

- 1) 이 법 시행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면
 - 귀국 희망자 벌금없이 귀국조치
 - 일정 기간의 신고기간 설정하고 이 기간 내 신고 있을 경우 형사처벌 면제
 - 기간 내 신고 있는 경우 노동 허가 부여
 -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2) 이 법은 곳곳과 도시에 시행